

안산시 청년창업 펀드(4호) 조성 출자안



안 산 시

안산시 청년창업 펀드(4호) 조성 출자안

의안 번호	10-12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6. 8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☐ 제안이유

- 미래산업을 주도할 청년창업·벤처, 중소기업에 투자하여 관내 잠재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시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「안산시 청년창업 펀드(4호)」 출자를 위한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.

☐ 법적근거

-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1조
- 「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5조의2, 제10조
※ 관계법령 발췌서 : 【붙임 1】

☐ 주요내용

- 추진방향
 - (펀드조성) 공익성(기업성장 지원)과 수익성(적정 수익률)의 조화
 - (펀드운용) 전문운용사 선정으로 투자→회수→재투자 선순환 체계 마련
 - (市 정책사업) 펀드 투지지원을 위한 우수기업 발굴 및 지원 사업 추진
- 출자개요
 - 출자대상 :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된 벤처투자조합
 - 출자금액 : 20억원(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)
 - 출자방법 : 정부(모태펀드)가 공모·선정한 투자조합에 출자자로 참여
 - 출자방식 : 市 직접 출자
 - 납부방식 : 일시납 or 수시납 *펀드운용사의 출자요건에 따라 변경가능
 - 출자시기 : 펀드조합 결성 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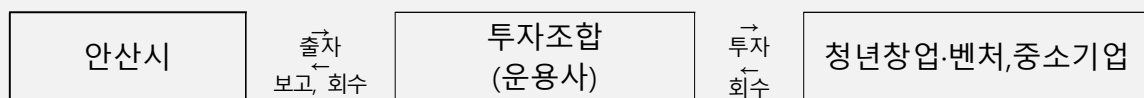
- 출자자 구성

구분	업무집행조합원(GP) ¹⁾	유한책임조합원(LP) ²⁾	특별조합원
책임 권한	(공통) 의결권, 재산분할권, 기타 법률 및 규약에 규정한 권리		
	·조합재산의 관리, 운영 ·투자대상의 선정 및 투자 ·투자업체의 육성, 지원 ·조합재산의 배분, 회수 ·조합의 회계 및 채무의 책임	·조합채무에 대한 출자금 범위 내에 책임 ·재산현황, 업무집행현황에 대한 감사 ·투자기업 및 사업현황 등 필요한 사항 보고요구	·업무집행조합원의 투자, 자금집행, 계약 등에 대한 총괄 감사, 감독
출자금 (총250억)	조합 약정총액의 1% 이상	안산시 20억원 민간투자 130억원	모태펀드 100억원

안산시 청년창업 펀드(4호) 조성개요

- 조성규모 : 250억원(모태펀드 100, 시 20, 민간 130)
- 조성재원 : 국비(모태펀드), 시비(중소기업육성기금), 민간투자금(민간투자자 등)
- 조성형태 : 모태펀드를 활용한 투자조합형(모태펀드+GP+LP)
- 운용주체 : 펀드운용사(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운용사)
- 운용기간 : 2027. ~ 2034. (8년, 투자4년+회수4년)
- 투자대상 : 청년창업·벤처, 중소기업
- 투자조건 : 안산소재(이전) 기업에 안산시 출자액(20억원)의 2배수 이상 투자

<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(4호) 추진 체계 >



☐ 예산수반사항 : **【붙임 2】** ※ 비용추계서 첨부

☐ 방침결정문 : **【붙임 3】**

☐ 기타 참고사항

○ 청년창업 펀드(4호)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 : **【붙임 4】**

- 1) 업무집행조합원(GP) :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자로서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조합원, 펀드의 투자/회수 의사결정 등 운영 주체
- 2) 유한책임조합원(LP) : 투자조합을 구성하는 출자자(개인, 법인, 기관 등)로 출자액 한도로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

관계법령 발췌서

☐ 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

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☐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71조

제71조(기금의 투자 등) ④ 「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.

1. 벤처투자조합
2. 모태조합
3. 신기술사업투자조합

☐ 「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5조의2

제5조의2(출자·출연대상) 기금은 벤처투자조합 등의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·출연에 사용할 수 있다.

☐ 「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제10조

제10조(기금의 지출)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.

6.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 참여를 위한 출자금 또는 출연금

[붙임 2]

(제2-1 쪽)

안산시 청년창업 펀드(4호) 조성 출자안 비용추계서

(제3조제1항)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

가.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

-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2, 제10조제6호

나. 비용 발생 요인

- 안산시 청년창업 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

2. 비용추계

가. 비용추계의 전제

- 관내 기업의 성장지원 및 투자를 위한 출자금액

나. 비용추계결과

(단위: 천원)

구 분	2023년	2024년	2025년	2026년	2027년	비 고
총 소요액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-	2,000,000	
청년창업 펀드 출자금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-	2,000,000	

다. 재원조달방안 : 2027년 본예산에 일반회계(기금전출금)편성

-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자
-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자액 보전
 - 2027년 본예산 세출예산으로 편성(기금 전출금)
- 예산담당부서와 협의 필[청년정책관-7249(2026. 6. 26.)호]

3.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: 해당없음

4. 작성자: 청년정책관 과장 이세영

(제2-2쪽)

< 연도별 비용 추계표 >

(단위: 천원)

구 분		1차연도 (2023년)	2차연도 (2024년)	3차연도 (2025년)	4차연도 (2027년)	계
세 입						
세 출	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8,000,000
기금 전출금	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8,000,000
재원 조달						
의존 재원	소 계					
	보조금					
	지방교부세					
자체 수입	소 계					
	지방세수입					
	세외수입					
기 금	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2,000,000	8,000,000
기 타 (채무부담, 민자 등)						